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56호 2020. 9. 7.(월)

고 시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----- 2

공 고

-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----- 4

회람

목포시 고시 제 2020-248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7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	불 임	참 조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3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(조서)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96	2020.9.7	신축으로 기존 건물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철로마을길4번길 1-1	2020.9.7	신축으로 기존 건물멸실

목포시 공고 제2020-1386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9. 7.

목 포 시 장

1. 제정이유

- 「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으뜸맛집 지정·관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으뜸맛집의 신청자격 및 지정절차 등 (안 제1~3조)
- 으뜸맛집 재평가 (안 제4조)
- 으뜸맛집 지정 취소 (안 제5조)
- 으뜸맛집 지정등의 재교부 및 지정의 특례 (안 제6~7조)

3. 관련법규

- 「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맛집의 지정 등) 및 제6조(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)

4. 제정 규칙안 : 붙임

5. 입법예고

○ 2020. 9. 7. ~ 9. 28. (21일간)

6. 의견제출

○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. 9. 28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관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
나 .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: 목포시청 관광과(목포시 양을로 203, 58613)

- ☎ 061-270-8635 / Fax 061-270-8569 / 이메일 dkdlel6541@korea.kr

7. 기 타

○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자격) ① 목포시 으뜸맛집(이하“맛집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. 단,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업소,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.
② 양도·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 이상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,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

제3조(맛집의 지정절차 등)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선정 신청서를 목포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맛집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 서류평가표와 별표 2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으뜸맛집선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.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해당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1차 서류심사표는 별표 1과 2차 현장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.
⑤ 시장은 맛집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, 맛집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맛집 지정증과 별표 3호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⑤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정의 재평가)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맛집에 대한 적합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별표 2의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지정 및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5조(지정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맛집 지정서 회수

2. 맛집 표지판 회수

3.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

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정증의 재교부) ① 목포시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맛집 지정의 특례)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,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으뜸맛집 지정업소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시행규칙 시행 전 으뜸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·관리 한다.

[별지 1호서식]

(접수번호 :)

「목포 으뜸맛집」선정 신청서

상 호 명			
소 재 지	(전 화 :)		
대표메뉴	3개 이내	업 종	예)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
대 표 자	(휴대전화 :)		
조리기능자 (조리책임자)		대표자와의 관계	
인증현황	☐ 모범음식점 ☐ 위생등급제 ☐ 남도음식평가 ☐ 기타 (V 표시)		
으뜸맛집 이행운동	▪ 1인기준 1만원이하 단품메뉴개발이 가능합니까?		☐ 예 ☐ 아니오
	▪ 입식테이블 교체 등 음식문화조성에 참여 하시겠습니까?		☐ 예 ☐ 아니오
	▪ 위생복 상시착용 등 위생·친절 서비스에 상시 노력하시겠습니까?		☐ 예 ☐ 아니오

위와 같이 20 년 목포으뜸맛집 선정에 신청하며, 선정을 받은 후에는 목포시 음식관광 발전을 위하여 음식문화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업소명 :

신청인 : (인)

대표자와의 관계 :

목포시장 귀하

- ※ 첨부서류
1.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
 2. 관련사진(대표메뉴, 업소전경)
 3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

[첨 부 2]

관련사진(대표메뉴, 업소 전경)

대표메뉴 (상차림)	대표음식 (1)	대표음식 (2)
	대표음식 (3)	메뉴판 사진
음 식 점 내부사진		
음 식 점 외부사진		

[첨 부 3]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

- ☐ 수집·이용목적 : 목포시는 「목포 으뜸맛집 선정」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자 합니다.
- ☐ 수집항목 : 대표자조리사 성명, 연락처, 업소현황(주소, 연락처, 영업면적, 메뉴재료 등)
- ☐ 이용범위 : 「목포 으뜸맛집 선정」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.
- ☐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**3년**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
※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, 이 경우 선정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☐ 개인정보처리 위탁 : 목포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까

☐동의함☐동의하지 않음

- 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: 맛집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으뜸맛집 선정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※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, 이 경우 목포 으뜸맛집 선정사업에 제한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

☐동의함☐동의하지 않음

20 년 월 일

동 의 자 성 명 :

(서명/인)

목포시장 귀하

[별표 1]

「목포 으뜸맛집」서류심사 평가표

업 소 명			
대 표 음 식	(가 격 : 원)	(가 격 : 원)	
영업신고일		영 업 면 적	
영 업 시 간		객 석	입식 / 좌식 석

항 목	평가 기준	배점	심사결과			최종 점수
			A	B	C	
1.결격사유	◦ 신청자격 미달업소 해당여부 ◦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,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여부 ◦ 전국 10개이상, 전라권 5개이상 프랜차이즈 업소 해당여부 ◦ 목포으뜸맛집, 모범음식점 등 지정취소 2년 이내여부	부 적 합 □				
2.역 사 성	◦ 우리지역만의 특화메뉴, 업소 차별성 해당여부 ① 우수 : 20점 ② 보통 : 18점 ③ 미흡 : 15점	20	20	18	15	
	◦ 지역 내 영업연수 기간 ① 10년이상 : 10점 ② 5~9년 : 8점 ③ 2~4년 : 6점	10	10	8	6	
3.대외인증	◦ 모범음식점, 남도음식명가, 위생등급제 지정 등 ① 해당 : 10점 ②,③ 미해당 : 0점	10	10	0	0	
4.적 극 성	◦ 으뜸맛집 시책 참여도 - 1인기준 1만원이하 단품메뉴개발 의사 - 업소내 30%이상 입식테이블 교체 의사 - 친절·위생 서비스를 위한 상시 노력 의사 ① 3개 : 30점 ② 2개 : 25점 ③ 1개 : 20점	30	30	25	20	
5.고객추천	◦ 시민, 관광객 등의 인지도 (전체 득표수에 따라) ① 상위 5% : 30점 ② 30% : 25점 ③ 65% : 20점	30	30	25	20	
총 점		100	100	76	61	
평가점수 합계						
		점				
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□ 부 적 합 □						

심사위원 : 성명 (서명 또는 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 성명 (서명 또는 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 확 인 자 : 목포시 관광과 맛의 도시팀 성명 (서명 또는 인)

[별표 2]

「목포 으뜸맛집」현장심사 평가표

업 소 명		영업연수	
대 표 자		대표메뉴	

평가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	심사결과			최종 점수
			우수	보통	미흡	
1. 맛		40				
	①향, 식감 등 대표음식의 맛	20	20	15	10	
	②대표음식의 창의성 및 특이성	5	5	3	1	
	③지역특산물, 신선한 재료 등 식재료 활용의 능숙성	5	5	3	1	
	④그릇 등 상차림 구성 적정성	5	5	3	1	
	⑤반찬류의 맛과 가짓수 적정성	5	5	3	1	
2.서 비 스		15				
	⑥방문고객 접점부터 배송까지 서비스 표준화 정도 - 맞이, 안내 및 주문, 서빙, 추가주문, 결제, 배송 등 응대	5	5	3	1	
	⑦고객 불만(요청)사항 등 조치법	4	4	3	2	
	⑧예약관리 시스템 운영	3	3	2	1	
	⑨식당규모 대비 주차시설 확보	3	3	2	1	
3.위 생		15				
	⑩주방바닥, 환기구 등 조리장 관리 적정성	5	5	3	1	
	⑪화장실, 내부 집기·비품 등 내·외관 청결	4	4	3	2	
	⑫위생복·위생모 착용 등 종업원의 위생관리 상태	3	3	2	1	
	⑬개인용 식기 제공	3	3	2	1	
4.향 토 성		15				
	⑭향토식재료 및 향토스토리의 활용성	8	8	7	6	
	⑮목포음식 고유의 특성 해당 여부	7	7	5	3	
5.분 위 기		10				
	⑯조명, 온도, 소음, 환기 등 쾌적한 실내 분위기	5	5	3	1	
	⑰음식과 업소 내·외관, 간판 등의 조화	5	5	3	1	
6.영업철학		5				
	⑱영업주의 음식에 대한 신념	5	5	3	1	
총 점		100	100	68	36	점

심사의견

-메뉴구성, 맛 등
-맛집 적합조건 등

심사위원 : 성명

(서명 또는 인)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[별지 2호서식]

목포 으뜸맛집 지정증

업 소 명			
대 표 자		생년월일	
영업형태		전화번호	
소 재 지			
대표메뉴			
지정내역			

위 업소를 「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으뜸맛집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목 포 시 장

[별지 3호 서식]

목포 으뜸맛집 재교부 신청서

업 소 명			
대 표 자		생년월일	
영업형태		전화번호	
소 재 지			
대표메뉴			
재교부사유			

위 업소를 「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시행규칙 제6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목 포 시 장

[별표 3]

으뜸맛집 지정표지판(제3조 제4항 관련)



[별표 4]

목포 으뜸맛집 선정기준(제3조제4항 관련)

배점순위	평 가 항 목	비 고
1	음식이 맛있는 업소	
2	향토이야기 및 지역특산물 등 식재료 활용에 능숙한 업소	
3	메뉴 및 분위기, 상차림구성 등 차별화된 업소	
4	위생상태 및 친절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	
5	우리시 음식문화조성에 실천 의지가 있는 업소	
6	대중에게 인지도 있고, 역사성이 있는 업소	